

# 2024 객관식세법 정오표

정지선 · 윤성만 · 유은종 · 정우승 공저  
상경사 출간

- 이 정오표는 『2024 객관식세법』 제13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 이 정오표는 정오사항이 발견될 때마다 수시로 반영되어 업데이트됩니다.

## 2024.2.23. 업데이트 사항

| 면         | 행   | 종전의 내용                         | 고칠 내용                      |
|-----------|-----|--------------------------------|----------------------------|
| 1권 법인-146 | 하 1 | 별해 : 채권분석표를 이용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계산 | <삭 제>                      |
| 1권 법인-168 | 하 8 | B은행 차입금은 상환일이 2024.2.28.이므로    | B은행 차입금은 상환일이 2024.3.2.이므로 |

## 2024.4.15. 업데이트 사항

| 면         | 행    | 종전의 내용          | 고칠 내용                             |
|-----------|------|-----------------|-----------------------------------|
| 1권 법인-169 | 상 16 | 차입일 : 2022.7.1. | 차입일 : 2022.6.30.                  |
| 1권 부가-98  | 상 15 | 8,000만원         | 1억 400만원                          |
| 1권 부가-99  | 상 13 | 8,000만원         | 1억 400만원                          |
| 1권 국가-55  | 상 8  | 통고처분하는 경우       | 통고처분하는 경우(통고처분과 관련된 세목 및 세액에 해당함) |
| 2권 부가-40  | 상 18 | 8,000만원         | 1억 400만원                          |

## [참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개정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시행일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부칙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제116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2호아목·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간이과세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2.29.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